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제의요구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00. 8. 16.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000. 7. 28. 이송되어 온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9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합니다.

이 유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1. 동 조례안 제4조(위원회) 제2항 제2호·제3호에서 규정한 위원수를 각동수로 조정
 - 위원회 심의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주민대표 및 환경·도시분야 전문가의 위원수를 동수로 하여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2. 동 조례안 제4조(위원회) 제1항의 위원회 기능중 “심의·결정”을“심의”로 조정
 - 동 조례안에서 정한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한 자문기관으로서 동 조례안에 의한 기능은 조언·권고·건의·심의·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3.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최소한 200m 이상 벗어난 지역을 설치허용지역에 포함
 - 공원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4.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실제 그 지역에 일정기간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축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도록 내용 추가.
 - 외지인의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규제

※ 건설교통부에서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이념인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국토관리체계확립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중에 있음(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 2000. 7. 3.입법예고)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시설 및 지역등 준농림지역내 휴게음식점등 (이하 “음식점등”이라 한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농림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 지역으로서 같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외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준농림 지역”으로 결정고시 한 지역을 말한다.
2. “휴게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휴게음식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 시설로서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단란주점”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설치허용지역”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단서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등의 설치를 시장이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음식점등의 설치허용지역) 준농림지역내에서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음식점등의 설치허용지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음식점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음식점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준농림 지역내 음식점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 ① 제3조의 준농림지역내 음식점등의 설치 제한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내
2. 심의대상 지역의 주민대표 5인 이내
3. 환경, 도시분야 전문가 3인 이내
4. 관계공무원 3인 이내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관련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공고) ①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거리의 환산) 설치허용지역의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2. 자연마을의 경우는 집단화된 취락 가장자리 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한다.
3. 기타의 경우는 부지경계로부터의 직선거리로 한다.

제12조 (타 규정과의 관계) 준농림지역내에서 음식점등의 설치는 다른 법령과 조례로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농림지역안의 음식점등 설치 허용지역(제3조관련)

1. 저수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2. 저수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3. 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 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중 당해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 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을 벗어난 지역
7.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연안구역을 제외 한다)을 벗어난 지역
8.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하수도가 설치·운영 되거나 10호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1호~7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주: ① “집수구역”이라 함은 빗물이 상수원·하천·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농성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② “유하거리”라 함은 하천·호소 또는 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

③ “제1지류”라 함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